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37
----------	-----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9일

발의자 : 우형찬 의원

찬성자 : 박진형, 서영진, 김상훈,  
최관술, 박운기, 신언근,  
강감창, 박중화, 박기열,  
김태수, 장우윤, 김희걸,  
김영한, 박호근, 장인홍,  
김생환, 유찬중, 김문수,  
유용, 문영민, 강성언,  
박마루 의원 (22명)

## 1. 제안이유

지하철은 매일 수백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기관으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국가 법령 등에 따른 무임수송 및 낮은 운송원가 등에 따라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부채 또한 막대한 상황임

한편 공사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하철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있고, "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근거로 이에 대한 추가운임을 30배 부과하고 있으나

추가운임 부과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알림으로써 부정승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 추가 징수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사업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2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 신 설 &gt;</u></p>	<p>제2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p> <p>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첨부.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호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 운임 장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유형찬